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승미 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 제2105호

다. 제출일자 : 2021. 1. 11.

라. 회부일자 : 2021. 1. 21.

2.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마을버스 내 위생,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 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마을버스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사업자에게 마을버스 차량 내의 위생, 방역 등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제7항)

나.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마을버스를 이용할 권리 및 정해진 안전수칙 준수하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안 제11조의 2)

다.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차한 승객을 하차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7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26. ~ 2021. 2. 2.

○ 제출의견 :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1) 버스정책과-3250호(2021.1.31.)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관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2020.8.12.)되어 근거 법률이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발병 및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경우의 대응 등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마을버스 차량 내 위생, 방역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버스승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객을 하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10조제7항)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사업자에게 마을버스 차량에 대해 위생, 방역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²⁾ 및 제49조³⁾에서 “시장은 운송수단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에 시장이 마을버스 위생 및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마을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안 제11조의2)

-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및 전염병 관련 시책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4)에서 운송사업자는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시행>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가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차량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여객의 특정행위 제지 또는 필
요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⁵⁾ 등
의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마을버스 안
전 향상과 이용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
해진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전운행 방안 관련(안 제17조제5항)

-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
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및 폭행·협박으로 직무
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등에 대해 운송거부 및 이미 승차한 여
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5) 생략

5) 마스크, 코로나 차단 효과 어느 정도?... 직접 실험해보니 : 한국경제('20.10.23.)
- 바이러스 흡입량 80~90% 줄일 수 있는 연구결과 보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년 8월 12일에 개정⁶⁾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교통수단 방역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상태임
-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 현실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⁷⁾ 및 시행규칙 제30조⁸⁾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변경⁹⁾하여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음¹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시행>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통지 : 버스정책과-15198호('20.5.22.)

10)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1조(운송의 거절)

- 또한 ‘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¹¹⁾에서는 유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에 대해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며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마을버스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송거부와 여객하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특성과 선량한 이용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5. 비상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사전 고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설>

1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20.10.13.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